

International SOS는 우리가 이룩한 성실성과 사업적 성공에 대한 평판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판을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본 행동강령은 International SOS가 사업을 경영할 때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고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모든 공급업체에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공업체는 본 행동강령이 조직 내 전체에 전달되어 전 직원이 본 행동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OS는 제공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중요시하며 제공업체가 최소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함께 지키고자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1. 부패방지 규정의 준수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와의 비즈니스 관계나 다른 경우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영국 뇌물법(United Kingdom Bribery Act), 미국 해외 부패방지 관례법(United State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같은 국제 부패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International SOS 기업들은 뇌물, 불법 리베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금품 관련 당사 윤리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제공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현행 부패 방지 관련 법, 규정 및 기준 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의 모든 부패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공무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주기 위해, 혹은 거래의 획득이나 유지에 있어 부적절한 이익을 얻고자 귀중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2. 법률 준수

제공업체의 직원 및 사업체는 각국의 법률 및 기타 현행 법률, 규정, 규제, 기타 법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이는 독점금지, 무역통제,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에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현행 국제통상규정 법률, 규정, 규제 및 기타 법률 요건을 전부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International SOS는 핵심 정책으로 유럽연합, 싱가포르, 영국, 국제연합, 미국의 제재 조치를 준수하고, International

SOS가 직접 사업체를 보유하여 사업 영역 내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제재 조치를 공급 업체로 하여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각 관할권의 제재 조치를 성실히 준수합니다. International SOS나 International SOS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는 현행 제재 조치를 받는 기관, 조직, 법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3. 기밀/독점 정보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의 지적재산, 영업비밀 및 기타 기밀정보, 독점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International SOS와 계약에 따른 경우와 International SOS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International SOS의 경영에 관한 모든 정보나 자료는 제공업체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해당 정보가 공지되지 않는 한 제공업체에서 기밀로 다뤄져야 합니다.

4.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를 대신해서 다루는 개인정보를 무허가 공개, 접근, 사용 및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당해 서비스 제공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현행 데이터 개인정보법이나 데이터보호법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보장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윤리적 거래

고객 및 제공업체와의 윤리적 거래는 건전한 비즈니스 관계에 필수적입니다. International SOS는 모든 제공업체와 공정한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공업체의 신뢰성과 성실성은 물론이고 가격, 품질 및 서비스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송장, 대금결제 및 보고서는 상호 비즈니스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이와 동일하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업상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시행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보유한 공급자들도 계약 의무 준수의 일환으로 이 행동강령을 고수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개인이 본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또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이 있다면 똑같이 공개해야 합니다.

6. 돈세탁 및 금융 기록

제공업체는 돈세탁 행위를 근절하려는 현행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국제법과 규정에 따른 재무 기록과 재무 보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7. 건강 및 안전

International SOS 와 거래하는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 의 기준에 준하는 정도로 건강 및 안전을 중시해야 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International SOS 시설에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 파견 근로자는 International SOS 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는 제공업체가 마약, 음주 및 기타 금지 항목에 대한 서면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8. 사업 지속 계획

제공업체는 자연재해, 질병, 팬데믹, 범죄 행위 등을 통해 사업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제품과 서비스 납품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외에도 직원과 직원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직장 내에서의 존중과 배려

제공업체는 타인의 고유한 배경, 관점, 경험을 존중하고 연령, 장애, 혼인 및 합법적 동성 혼인 여부, 임신 및 모성애, 인종(피부색, 국적, 민족적 기원을 포함), 종교나 신념, 성별(젠더) 및 성적 정체성에 관해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업무 환경을 장려해야 합니다.

10. 현대판 노예제

제공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강제 노동, 담보 노동 또는 비자발적 노동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노동은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 서류를(가령, 여권, 근로 허가서 또는 기타 모든 개인의 법적 문서)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근로자들이 채용 과정과 고용 기간 동안 일자리를 얻는 것과 관련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의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근로자에게 적시에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처벌, 정신적 및/또는 신체적 강압이 금지됩니다. 징계 정책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공업체는 어떤 국가 또는 지방에서도 법적 고용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11. 환경에 대한 책임

제공업체는 모든 환경 관련 법,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잠재적인 환경 위험 요소를 확인하여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실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협력회사들이 납품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세계의 기후 보호 목적을 지지하고 환경 영향을 의식하여 지속 가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준수 및 위반

제공업체, 또는 제공업체가 International SOS 에 제공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관련 부정적이거나 기타 불리한 평판을 인지했거나 제공업체와 관련하여 International SOS 에 부정적이거나 기타 나쁜 평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한 경우, 제공업체는 International SOS 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자사의 직원과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 제공업체의 책임입니다.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위반의 심각성 및 상황에 따라 제공업체와 관계가 종료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

“International SOS” 는 AEA International Holdings Pte. Ltd.와 그 계열사를 의미하고, 여기서 “계열사”는 International SOS 를 통제하거나, International SOS 에 의해 통제되거나, International SOS 와 공동 통제를 받는 모든 법인이나 당사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통제”는 통상 계약에 의해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해당 법인이나 당사자의 경영 및 정책을 지휘할 의결권 또는 기타 권한 또는 능력을 가진 법인이나 당사자의 자본주금(또는 법인이 아닌 경우 기타 소유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강령”은 International SOS 의 제공업체 행동강령을 의미합니다.

“제공업체”는 현재와 미래에 International SOS 와 제공업체 계약을 체결하여 International SOS 가 자사 고객의 노동인력, 직원, 그리고 자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International SOS 의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그 밖의 인원을 위탁하는 개인 및/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행동강령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Compliance@internationalsos.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개정판 4.0 2025년 3월 3일 작성